

언론의 자주권과 언론중재제도와와의 관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올해들어 전주와 수원에서 그 지역의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단체 등의 각계인사를 초청, 지방토론서를 개최하였다. 4 월 28 일에는 전주코아호텔에서 박영상위원(한양대 신방과교수)의, 5 월 26 일에는 임상원 위원(고려대 신방과 교수)의 각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편집자 주

박 영 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언론의 자주권은 소박하게 외부의 간섭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기 완성이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뭉뚱그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중심으로 자기의 영역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을 말한다. 언론이 사회나 개인에 대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이 제구실을 다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언론 스스로는 물론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자주권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쪽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제구실을 다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자율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직접통제의 경우그것이 남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자율통제의 경우는 개인의 도덕률이나 윤리에 속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본다면 자율통제에 가까운 언론에 대한 견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기본권이 언론보도로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언론의 자주권과 개인의 기본권과의 현실적인 조화점을 찾도록 도와 주고 있는 까닭이다. 언론의 자유속에 침전되어 있는 의미나 가치를 여과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는 Isaiah Berlin 의 적극적/소극적인 접근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극적인 자유의 경우 우선 누구의 간섭없이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은 보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공관시장의 기능에 맡기자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결권과 자율권이 최대한 존중되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언론 자유가 있는 것과 동일시했다. 적극적인 언론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개인이 의무나 권위로부터 자유롭다」는 이분법적인 명제를 거부한다. 대신 「무엇을 위해 개인은 권위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언론 자체를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언론이 봉사하는 수용자 혹은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서 조감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접근권이나 반론권, 알 권리 그리고 자율규제 행위 등을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해석 방법은 언론의 의무나 책임을 대입시켜 설명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주권이라는 개념을 대입시키면 갈등이나 모순

관계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모순, 충돌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affirmative)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긍정적인 방법은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일반대중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적 이익(public interest)보다 공중의 이익(the public's interest)에 무게를 실자는 해석으로 보여진다.

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언론자유나 자주권의 관점에서 그 위상이나 성격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중재위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재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언저리를 보면 그 탄생이 80년대 언론기본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언론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려질 수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중요한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다른 사회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두리 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중재제도는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촉매작용을 한다고 볼 수있다. 언론도 사회를 구성하거나 일구는 제도이고 기관으로 본다면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이나 안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화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사회통제나 문화적인 통제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언론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회복시켜주는 장치는 성숙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고 보여진다.

언론기관은 소유구조에 관계 없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시에 존립을 위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언론기관은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존립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뉴스는 무엇보다 언론기관의 공익성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판단되고 재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은 기사작성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다 전달하는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혹은 가치 판단을한 후에 사실을 모아서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성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소박하게 말해서 실과하는 사실, 언론이 보도한사실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병에서 판단하는사실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고 이 간격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책적 주장」이란 어떤 것인지 포괄적이고 세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 진실에 가까운 사실만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자칫 취재보도의 자주권이 위축되는 분위기(chilling effect)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뉴스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 언론의 주장에 대한 반론권 그리고 국민의 악세스권을 촉진시킴으로써 언론자유를 폭을 확대시키고 미디어 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 한양대 신문과, 미주리 대(신문학 박사), 합동통신, 한양대 사회대학장

□ 저서 : 「뉴스란 무엇인가」, 「언론과 철학」, 「과학보도의 원칙과 규범」 외

□ 현재 한양대 신방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